

도서관의 자유와 권리선언에 관한 연구*

Freedom of Library and the Library Bill of Rights

邊 宇 烈(Byun, Woo-Yeoul)**

〈목 차〉

- | | |
|------------------------|----------------------------|
| I. 서론 | IV. 미국과 일본의 도서관 권리선언의 비교분석 |
| II. 도서관의 자유와 권리선언 | 1. 도서관 권리선언의 내용 |
| III. 도서관의 자유에 대한 史的 概觀 | 2. 도서관 권리선언의 구성요소 비교분석 |
| 1. 미국 | V. 요약 및 결론 |
| 2. 일본 | 참고문헌 |
| 3. 한국 | 부록 |

초 록

모든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를 위한 광장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모든 이용자에게 모든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도적인 장치는 일반적으로 도서관 권리선언의 형태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가 도서관 권리선언을 채택할 경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서관 권리선언의 의의를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도서관 권리선언의 변천과 내용을 분석하여 공통된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공히 공식기구인 도서관협회에서 도서관 권리선언을 채택하고, 권리선언을 유지·발전시키고 도서관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도서관 권리선언의 공통된 구성요소는 자료수집의 자유, 자료제공의 자유, 검열 거부, 관련단체와의 협력, 개인의 도서관이용 권리, 도서관의 시설 이용, 이용자의 비밀유지 등이다.

주제어 : 지적자유, 도서관의 자유, 도서관의 권리선언

Abstract

All libraries are forums for information and ideas. Therefore, libraries must have systematic devices through which library users can make use of library materials freely. The systematic devices usually have the form of Library Bill of Righ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offer basic data in case our country adopt Library Bill of Rights in the near future. In this thesis, the significance of Library Bill of Rights was investigated and the common components were drawn from the analysis of the changing processes and contents of Library Bill of Rights in the USA and Japan. In the USA and Japan, the Library Association, an official institution, adopted Library Bill of Rights and established permanent departments to keep and develop Library Bill of Right as well as to solve the problems such as infringement of freedom of library. The common components of Library Bill of Rights are as follows: freedom to collect materials, freedom to provide materials, right to refuse censorship, cooperation with the persons and groups concerned, a person's rights to use a library, fair use of the library facilities, and protection users' privacy.

Key Words : Intellectual Freedom, Library Freedom, Library Bill of Rights

* 이 논문은 2000학년도 공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 wybyun@kongju.ac.kr

• 접수일 : 2002. 7. 25 • 최초심사일 : 2002. 8. 27 • 최종심사일 : 2002. 8. 28

I. 서 론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이제 지식과 정보 그 자체는 다른 어떤 재화보다 높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는 개인의 專有物 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 유통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모든 지식과 정보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알 권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물론, 컴퓨터의 보급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지식과 정보가 부당하게 공개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가 공개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견해와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지식과 정보에 대한 최대의 접근성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보공개제도가 중요한 요소이지만 모든 지식과 정보의 廣場 이 되는 도서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상품화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계층간의 정보격차가 점점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모든 지식과 정보자원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도서관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도서관의 자유는 모든 지식과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도서관활동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서 탈피하여 자율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도서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미국은 1930년대에 이미 도서관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일본은 1950 년대에 도서관의 자유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도서관 권리선언을 살펴 도서관 권리선언의 도입배경과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도서관 권리선언의 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도서관의 자유와 권리선언

도서관은 모든 정보와 사상이 숨쉬는 광장이다. 도서관의 이러한 기능은 국민의 알 자

유와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관이다. 알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오늘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통적인 기본권의 하나로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알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自由權인 동시에 社會權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인간의 基本權에 해당하는 것이다.¹⁾

UN은 1948년 12월 10일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채택하였는데, 우리나라는 1988년 UN에 가입하여 「세계인권선언」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세계인권선언 중에서 도서관의 자유와 가장 관계가 깊은 내용은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와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라고 한 것이다.

도서관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도서관의 자유는 국민의 알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상과 정보를 위한 광장으로서의 도서관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²⁾

도서관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자료수집의 자유, 자료제공의 자유, 검열의 거부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이러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서관은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료를 선택하고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그 자료와 시설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자료수집에 있어서 사전에 검열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물론 권력이 개입하거나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조직으로부터 압력과 간섭에 의해 자료의 수집과 제공의 자유를 포기하거나 분류를 두려워하여 자기규제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³⁾

다시 말하면, 도서관은 어떠한 사상이나 의견을 포함한 자료라 하더라도 모든 이용자에게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도서관은 도덕률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도 아니고, 특정한 종교나 특정한 정치사상과 신조 그리고 특정한 학문적 주장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도서관의 자유는 헌법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지적 자유에 기본을 두고 있다. 국민의 지적 자유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기본적 인권의 일종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도서관의 자유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⁴⁾

도서관의 자유를 처음으로 주장한 미국에서는 도서관의 자유에 대하여 정확한 사전적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즉, ALA 평의회(Council)나 지적자유위원회(IFC : Intellectual

1) 金旺石, 『알 權利에 관한 研究』, 미간행석사학위논문, 中央大學校 大學院, 1983, p.71.

2) 정현태, 『공공도서관의 자유』,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2, p.39.

3) 古賀節子 外, 『圖書館資料論』, 東京 : 樹村房, 1983. p.40.

4) Ibid., pp.39-40.

Freedom Committee) 그리고 知的自由部(OIF : 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 등은 지적자유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선언과 운영지침을 천명하고 있지만 엄격한 정의를 내리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한계를 피하고 지적자유에 입장에 대하여 유연한 입장을 취하면서 정확한 개념정의를 유보한 채 사안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적자유에 대한 정의를 광의적으로 접근하여 상황에 따라 사서의 요구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⁵⁾

일반적으로 ALA 지적자유부에서는 도서관의 자유에 대한 활동의 범위를 ① 모든 도서관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 ② 자료의 선정과 이용에 대한 사서의 전문적 업무 ③ 이용자의 비밀유지와 보호 ④ 사서의 개인적 지적자유와 사회활동 참여 ⑤ 사회 변화와 교육에 있어서 도서관의 역할 등을 거론하고 있다.⁶⁾

그리고 日本의 塩見昇은 도서관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도서관의 활동범위를 ① 자유로운 표현을 규제하는 모든 검열의 거부 ② 자료의 수집과 제공에 있어서 권력의 간섭과 이를 두려워한 자기규제의 배제 ③ 모든 이용자에 대한 이용상의 제약 배제 ④ 자료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옹호 ⑤ 도서관 시설의 공평한 이용 ⑥ 사서의 신분과 지위의 보장 등을 들고 있다.⁷⁾

결국, 도서관의 자유는 이용자가 모든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활동의 원리를 말하며, 도서관활동 전반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 대응하는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⁸⁾

도서관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지적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선언의 형태로 채택되어야만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일본은 일본도서관협회에서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였고, 미국 역시 미국도서관협회에서 「도서관 권리선언」을 채택하여 도서관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도서관의 권리선언은 사실상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권리의 개념은 아니다. 다만 지적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검열에 대한 반대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기본 철학이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그리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통신비밀의 자유(제18조), 종교의 자유(제20조) 등에 비추어 헌법의 기본권 조항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사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개념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⁹⁾

5) 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Intellectual Freedom Manual*. 5th ed.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6. p.xix.

6) *Ibid.*, p.xx.

7) 塩見昇, 『知的自由と圖書館』, 東京 : 青木書店, 1989. p.205.

8) 정현태, 『공공도서관의 자유』,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2. pp.14-15.

9) *Ibid.*, p.38.

한편, 미국과 일본의 도서관 권리선언 이외에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은 1997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연차총회를 계기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도서관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정보접근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위원회(CAIFE :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를 결성하여 전세계적으로 도서관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1999년 3월 25일 IFLA 이사회가 「도서관과 지적자유에 관한 선언(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을 채택하였다.

이제 우리도 도서관 권리선언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도서관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한국도서관협회는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하겠다.

Ⅲ. 도서관의 자유에 대한 史的 概觀

현재, 세계적으로 도서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선언을 채택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은 1930년대에 이미 검열에 대비하고 국민의 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서관 권리선언을 채택하였고, 일본은 1950년대 초에 좌우익의 이념대결, 한국전쟁 그리고 미국의 메카시즘 등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도서관 권리선언을 모형으로 하여 일본의 실정에 알맞은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도서관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권리선언의 채택과정에 대하여 개관해 보기로 한다.

1. 미국

오늘날 미국도서관협회에는 지적자유위원회(Intellectual Freedom Committee), 知的自由部(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 독서자유재단(The Freedom to Read Foundation) 그리고, 지적자유회의(The Intellectual Freedom Round Table)가 도서관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활동의 핵심은 모든 이용자가 모든 종류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직의 신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공권력의 가혹한 검열은 없었으나 도서관자료나 도서관원에 대하여 공권력이나 압력단체 등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공격에 대하여 미국 도서관계는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도서관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오랜 세월을 걸친 경험을 가진 미국 도서관계는 여러 차례 개정된 도서관 권리선언(Library Bill of Rights)과 투쟁의

거점이 되는 지적자유위원회가 도서관의 자유를 수호하고 있다.

미국의 도서관 권리선언은 1939년에 처음으로 채택된 이후 1944, 1948년, 1961년, 1967년 그리고 1980년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 이들의 성립배경과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1939년의 도서관 권리선언

1930년대의 미국은 혼란과 긴장의 시대였다. 1939년 당시 노동자의 17%는 실업상태이었고, 노동조합의 수는 증가하고 있었으며, 때때로 과격한 데모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나치(Nazis)와 소련이 상호 불가침조약을 맺은 1938년 8월까지 자유주의자와 공산주의자를 불문하고 반 파시즘(Fascism) 세력은 힘을 합하여 인민전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미국 의회는 좌우익을 막론하고 파괴적 세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하원에 반미활동위원회(The House Committee on Un-American Activities)를 설치하였다.

당시의 프로레타리아 작가라고 할 수 있는 John Steinbeck, John Dos Passos, James T. Farrell 등은 언어나 행동에 있어서 사실주의를 제창하고 현상유지에 도전하는 사회관이나 정치적 견해를 빈번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1930년대에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Bulletin*(ALAB), *The Wilson Library Bulletin*(WLB), *The Library Journal*(LJ) 등의 잡지에서는 국가와 전문직에 영향을 주는 혼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이들 잡지에서 다룬 주된 내용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으며, ALA 임원들도 검열과 지적자유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였다.¹⁰⁾

도서관 전문직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 확립과 도서의 선택과 제공이라고 하는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검열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도서선택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도서관의 자유를 확보하고 검열에 반대하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인물은 위싱턴대학 도서관의 Bernard Berelson이었다. Berelson은 성인교육운동을 전개하면서 공공도서관이 민중의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특히 Des Moines 시립도서관은 성인교육의 센터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Des Moines 시립도서관 이사회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1938년 11월 「공공도서관 권리선언(Bill of Rights for the Free Public Library)」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권리선언을 작성한 관장 Forrest Spaulding은 「공공도서관 권리선언」을 3개의 주요 도서관계잡지인 ALAB, LJ, WLB와 성인교육위원회에

10) Louise S. Robbins, *Censorship and the American Library :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s Response to Threats to Intellectual Freedom, 1939-1969*. Westport, Connecticut and London, 1996. p.9.

동시에 발송하였다.

Des Moines 시립도서관의 「권리선언」은 세계각지에서 불관용, 언론자유 의 억압, 검열 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도서관의 기본정책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① 도서는 저자의 인종이나 국적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 견해와 관계없이 가치 와 흥미를 중심으로 선택해야 한다 ② 논쟁의 쟁점이 되는 자료는 가능한 한 모든 측면 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③ 회의실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고 회의는 무료로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¹⁾ 이러한 Des Moines 시립도서관의 권리선언은 ALA가 자체적인 선언을 채택하도록 만드는 계기를 제 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Des Moines 시립도서관의 권리선언 이외에 전문직의 思考를 자극하고 도서관 의 권리선언을 제정하게 만든 두 가지 사건이 있다.¹²⁾

그 하나는 1937년 Montana 주립대학 도서관장인 Philip O. Keeney 교수가 종신 재직권 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심리도 없이 해고된 사건이다. Keeney 교수를 해 고한 표면상의 이유는 도서관의 기본방침을 둘러싸고 총장과의 마찰 때문이었으나 실질 적인 해고의 이유는 현대의 사회적, 경제적 추세에 대한 모든 견해를 도서관자료에 포함 시키고자 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도서관계는 도서관 전문직이 전문직의 원리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래서 1937년 6월 ALA 의 급여, 직원, 신분보장위원회(ALA's Board on Salaries, Staff and Tenure)는 Montana 대학총장에게 Keeney 교수의 해고를 편지로 항의하였다. 또한 ALA는 1938년 여름에 미 국대학교수협회가 Keeney 교수의 해고에 항의한 것을 지지하는 결의를 하였다.

또 하나의 사건은 John Steinbeck의 저서인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를 검열한 사건이다. 이 책은 1939년에 출판되어 서평이나 일반독자들로부터 갈채를 받은 책 으로 사회에 대한 반향소설로는 최고의 작품으로 간주되는 프로레타리아 소설이다. 그러 나 1940년 Oklahoma州의 하원의원인 Lyle Boren은 의회에서 이 책을 비난하였다. 그리 고, 전국각지의 도서관에서는 이 책을 부도덕한 것이라는 이유로 또는 사회적 견해를 이 유로 열람을 금지시켰다.

이렇게 Keeney 교수의 사건과 「분노의 포도」사건은 ALA 평의회로 하여금 도서관의 권리선언을 채택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ALA 평의회는 1939년 여 름 Spaulding 문서 즉 Des Moines 시립도서관의 「도서관 권리선언」수정판을 만들어 채 택한 것이다. 곧 이어 ALA의 성인교육전문가인 John Chancellor는 각 도서관과 언론기관 에 배포할 목적으로 「도서관 권리선언」을 수백부의 broadside로 제작하여 여러 주의 도서관협회에 송부하였다.

11) *Ibid.*, p.11.

12) *Ibid.*, pp.12-13.

1939년의 도서관 권리선언(The Library's Bill of Rights)은 앞부분에 도입어구를 시작으로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그 내용 전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 권리선언(The Library's Bill of Rights, 1939)

오늘날 세계각지에서는 불관용, 언론자유에의 억압 그리고 검열이 소수집단과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유의해서 미국도서관협회 평의회는 아래의 사항이 공공도서관 봉사를 지배하는 기본방침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공개적으로 확인한다.

1. 공적 기금(public funds)으로 구입하는 도서와 기타 독서자료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가치와 관심을 위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자의 인종이나 국적 그리고 저자의 정치적, 종교적 견해에 영향을 받아서 선택해서는 안된다.
2.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도서와 기타 독서자료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측면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기술한 것이어야 한다.
3.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이나 문화적인 활동을 위하여 그리고 시사적인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회의실(meeting rooms)의 이용은 특별히 환영하여야 한다. 도서관의 회의실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신념이나 소속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선언은 미국도서관협회 평의회에서 1939년 6월에 채택되었으며, 평의회는 개별도서관의 이사회에서 채택되도록 권장한다. 미국도서관협회. 시카고, 1939

1939년의 「도서관 권리선언」은 ALA의 신념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공도서관의 사명을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교육하는 기관(institution to educate for democratic living)」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사상의 상호교환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호자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1939년의 「도서관 권리선언」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먼저, Des Moines 선언에는 포함되어 있었던 선전(propaganda)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선언은 모든 관공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공공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또한, 검열에 반대하기 위한 사서직의 자세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 권리선언을 유지하기 위한 ALA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언급이 없다.¹³⁾

그러나 이 권리선언은 전문직의 신조를 명확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되었고, 지적 자유의 이념과 전문직의 현실적 행동과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때 행동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

13) Louise S. Robbins, *Censorship and the American Library :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s Response to Threats to Intellectual Freedom, 1939-1969*. Westport, Connecticut and London, 1996. p.14.

는 현장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2) 1944년의 도서관 권리선언

1939년의 권리선언이 채택된 이후인 1939년 말경에 공공도서관에서는 「분노의 포도」를 서가에서 빼 내고 열람을 금지시키는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ALA는 최근의 검열상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장은 1939년 도서관 권리선언을 주도한 Forrest Spaulding이 임명되었다.

1940년 5월 Cincinnati에서 개최된 ALA 총회에서 Spaulding은 검열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였는데, 보고의 요지는 지적자유와 전문직의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을 결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열에 직면하고 있는 도서관 이사회나 사서에게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ALA내에 설치하자는 것이었다.

ALA 평의회는 Spaulding의 요구를 수용하여 만장일치로 「도서관이용자의 탐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지적자유위원회(Committee on Intellectual Freedom to Safeguard the Rights of Library Users to Freedom of Inquiry)」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1947년에 지적자유위원회(Committee on Intellectual Freedom)로 명칭을 바꾸었으나, 일반적으로 IFC(Intellectual Freedom Committee)라고 부르고 있다.¹⁴⁾

이렇게 하여 도서관 권리선언을 유지시키고 지적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한편, 1944년에는 미국의 파시즘을 폭로한 John Carlson의 「Under Cover」와 흑인여성 과 백인남성의 인종간의 사랑을 묘사한 Lillian Smith의 「Strange Fruit」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도서관장으로서의 적합 여부가 격렬하게 논의되었는데 특히 「Under Cover」는 연방의회에서도 논의되었다.¹⁵⁾ 그래서, 지적자유위원회는 이 문제를 검토하여 도서관 권리선언 제1조에 「사실에 입각하여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도서가 일부인사들의 항의에 의해서 도서관에서 배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ALA 평의회에서는 이를 승인하였다.¹⁶⁾

1944년의 도서관 권리선언은 1939년의 도서관 권리선언과 비교하여 크게 변화된 것은 없고, 단지 검열에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 일부 보강된 것 뿐이다.

(3) 1948년의 도서관 권리선언

1944년에 도서관 권리선언을 개정한 이후에도 반미활동위원회나 종교단체, 재향군인회 등公私에 의한 검열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IFC는 도서관의 권리

14) *Ibid.*, p.16.

15) *Ibid.*, p.19.

16) 古賀節子 外, 『圖書館資料論』, 東京: 樹村房, 1983. p.41.

선언을 유지하고 지적자유를 수호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현장의 사서들조차도 검열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이 냉전체제를 유지하던 시기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억압이 일상화되었던 시기이다. 억압 풍조는 냉전시대나 McCarthy-ism 시대의 특징이다. 이러한 풍조는 Wisconsin州의 상원의원인 Joseph McCarthy 이전에도 존재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검열의 대상이 되고 논란의 쟁점이 된 도서들을 열거해 보면, *'The Hucsters'*, *'Memoirs of Hecate County'*, *'Building America' Series*, *'The Land of Soviets'*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억압과 검열이 가중되고 있을 때, 1948년의 ALAB, LJ, WLB 등의 잡지에서는 협박과 억압에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ALAB는 2월호에서 검열의 문제를 다루었고, 5월호에는 「금서와 마녀사냥(Book-banning and Witch-hunts)」이라는 논문을 수록하였다. 이 논문의 요지는 사서가 양심과 탐구의 자유를 지키지 않으면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WLB는 Columbia 대학에서 연설을 금지한 사건을 보고하였으며, LJ는 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지적하면서, 도서관에 검열의 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IFC에 통보하도록 요청하였다.¹⁷⁾

이러한 상황 속에서 ALA의 1948년 연차대회가 Atlantic City에서 개최되었는데, 대회의 주제는 「공공문제의 도전(The Challenge of Public Affairs)」이었다. 이 대회의 중요한 핵심은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양있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도서관의 역할을 모색하고, 출판의 자유와 검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도서관 권리선언의 정신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각 지방에 IFC 지부를 설치하자는 것이었다.

이어서, 1948년 6월 18일 IFC는 도서관 권리선언의 개정안을 ALA 평의회에 제출하여, 약간의 문맥 수정을 거친 후에 쉽게 통과되었다.

이렇게 채택된 1948년 도서관 권리선언은 호평을 받았다. *The New York Herald Tribune*은 검열에 도전하는 ALA의 용기있는 지도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자유로운 표현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지적자유를 수호하는 사서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논평하였다.¹⁸⁾

1948년의 도서관 권리선언은 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칭을 1939년의 도서관 권리선언에서는 「The Library's Bill of Rights」로 표기하였으나 1948년부터는 「Library Bill of Rights」라고 표기하였다.

1948년의 도서관 권리선언의 특징을 간단하게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⁹⁾

17) Louise S. Robbins, *Censorship and the American Library :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s Response to Threats to Intellectual Freedom, 1939-1969*. Westport, Connecticut and London, 1996. pp.30-33.

18) *Ibid.*, p.35.

19) 古賀節子 外, 『圖書館資料論』, 東京: 樹村房, 1983. p.41.

- ① 지금까지의 도서관 권리선언은 공공도서관에만 적용할 목적으로 채택한 것이었으나 모든 관중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도서관 권리선언이 되었다.
- ② 검열에 도전하는 도서관의 책임을 분명하게 기술하였다.
- ③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인이나 집단과 투쟁하기 위하여 과학, 교육, 출판 등의 관계단체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4) 1961년의 도서관 권리선언

1961년의 도서관 권리선언은 1948년 권리선언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흑백갈등과 인종차별(segregation) 문제가 야기되어 여러 곳에서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1960년 Virginia州의 Petersburg에서는 백인용 열람실과 흑인용 열람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백인용 열람실에서 자료이용을 요구한 흑인을 체포하고 열람실을 폐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²⁰⁾ 그래서, 90일간 시험적으로 이용자에게 2.5 달러의 이용료를 받고 관외대출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에는 입관할 때 좌석표를 배부하여 지정된 좌석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흑백차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흑인 이용자는 거의 없었고 일주일에 2명 정도였으며, 주로 교사였다.²¹⁾

또한, LJ 1960년 12월 15일호에서는 Danville 공공도서관의 차별정책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사건의 요지는 Danville 공공도서관에서 흑인과 백인의 좌석차별과 폐관에 대하여 독서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하는 기사였다.²²⁾

이러한 과정에서, 1961년 ALA 동계대회에서 시민자유위원회(Civil Liberties Committee)가 평의회에 도서관 이용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자고 제안하였다. ALA 평의회는 이 안건을 투표에 붙여 통과시켰다. 그래서, 1961년 2월 2일 ALA 평의회는 도서관 권리선언 제5조에 도서관 이용의 자유(Freedom to Use Library)에 대한 항목을 새로 추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1961년 3번째로 개정된 도서관 권리선언에서는 「개인의 도서관이용에 관한 권리는 인종, 종교, 국적 그리고 정치적인 견해를 이유로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된다(The Rights of an individual to the use of a library should be denied or abridged because of his race, religion, national origin of political views)」는 조항을 추가하게 된 것이다.²³⁾

20) Louise S. Robbins, *Censorship and the American Library :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s Response to Threats to Intellectual Freedom, 1939-1969*. Westport, Connecticut and London, 1996. p.109-110.

21) 河井弘志, “アメリカの知的自由の思想と組織活動,” 《現代の圖書館》, 第14卷, 第1號(1976. 3), p.31.

22) Louise S. Robbins, *Censorship and the American Library :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s Response to Threats to Intellectual Freedom, 1939-1969*. Westport, Connecticut and London, 1996. pp.111-112.

23) *Ibid.*, p.112.

(5) 1967년의 도서관 권리선언

1967년의 도서관 권리선언은 1961년의 권리선언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다. 개정의 발단은 Gains가 ALAB 1965년 10월호 「ALAB 지적자유」란에서 도서관 권리선언의 내용중에 「건전하고 사실에 기초하여 권위가 있는(of sound factual authority)」독서자료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제의한 것이다. 1944년 ALA가 「Under Cover」와 「Strange Fruit」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서관 권리선언에 「건전하고 사실에 기초하여 권위가 있는」이라는 구절을 추가하였었다. 일찍이 1950년에 IFC는 이 구절의 제거를 검토했었다 IFC의 생각은 새로운 사상이나 의견 그리고 논쟁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상이나 의견은 단순히 「건전하고 사실에 기초하여 권위가 있는」 것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타지나 소설의 영역은 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1950년에는 도서관 권리선언을 수정하지 못하고 말았다.

실제로 Illinois 州의 어떤 공공도서관 관장이 자신의 종교가 Catholic 이었는데 protestant 계의 출판물을 배제시키려고 하였다.²⁴⁾

그리고 다른 사례보고에 의하면 어떤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40%가 Catholic이었는데 Catholic 관장이 「Church and State」라는 잡지의 계속 기증을 거부하였다. 이 잡지는 「Protestants and Other 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의 공식기 관지였다.²⁵⁾

위의 두 가지 사례는 모두 「건전하고 사실에 기초하여 권위가 있는」 항목을 악용하여 배제시키고, 거부했던 것이다.

한편, 1967년 여름 ALA 평의회가 개최되기 직전 「Intellectual Freedom and the Teenager」를 주제로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는 IFC, Young Adult Services Division,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가 공동으로 개최한 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지적자유는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청소년에게도 도서관장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²⁶⁾

이러한 상황에서 1967년 4월 ALAB는 도서관 권리선언 개정안을 소개하였고, 변경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 개정안은 1967년 6월 28일 ALA 평의회에서 채택되었다.

그러면, 1967년 도서관 권리선언에서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먼저, 권리선언의 문장 전체를 압축시키고, 시대의 흐름에 적당하지 않은 용어들을 최신 용어로 바꾸는 등 전체적으로 대폭적인 수정이 되었다.
- ② 「건전하고 사실에 기초하여 권위가 있는」항목은 기준이 명백하지 못하고 범위를 정

24) 河井弘志, “アメリカの知的自由の思想と組織活動,” 《現代の圖書館》, 第14卷, 第1號(1976. 3), p.32.

25) Louise S. Robbins, *Censorship and the American Library :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s Response to Threats to Intellectual Freedom, 1939-1969*. Westport, Connecticut and London, 1996. p.134.

26) *Ibid.*, p.136.

하는 것도 어려우며 악용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였다.

- ③ 1967년의 도서관 권리선언에서는 이용자의 권리보장에 「연령(age)과 사회적 견해(social views)」를 추가하였다.²⁷⁾
- ④ 그리고 도서관장서에 시청각자료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독서자료(reading matter)」로 표기되어 있던 것을 「도서관자료(library materials)」로 수정하여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전에는 脚註형식으로 시청각자료를 포함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수정한 것이다.

(6) 1980년의 도서관 권리선언

1967년 이후에도 검열문제로 인하여 도서관 권리선언의 보강이 필요하였으나 여러 번 수정하거나 註釋을 첨가하는 것은 권리선언의 권위를 약하게 만든다고 판단하여 개정을 유보하였다. 그 대신에 1971년 Dallas에서 개최된 IFC 연차대회에서 권리선언의 해설(Interpretation)을 채택하여 권리선언의 본문과 동등하게 취급하기로 하였다.²⁸⁾

그리고 1974년 ALA는 권리선언의 본문과 해설은 물론 지적자유에 관한 여러 가지 공식문서를 집대성하고 해설을 추가하여 「지적자유 매뉴얼(Intellectual Freedom Manual)」을 간행하였다. 여기에는 도서관 권리선언의 이념을 재확인하고 보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²⁹⁾

한편,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1976년 6월 ALA 평의회는 ALA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시카고대회에서 「인종과 성차별에 대한 결의(Resolution on Racism and Sexism Awareness)」를 채택하게 되었다.

1980년 도서관 권리선언을 개정하게 된 시발점은 1977년에 「사서직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Status of Woman in Librarianship)」가 도서관 권리선언의 내용 중에서 도서관 봉사에 대한 성차별을 없애고 성과 관련된 고유명사 자체(sex-linked pronoun usage)를 삭제할 것을 ALA에 요청한 것이다.³⁰⁾

그래서 1978년 ALA 동계대회에서 IFC는 자체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권리선언 개정안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1979년 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ALA 동계대회에서 IFC는 도서관 권리선언 개정안을 공표하고, 개정안을 ALA 평의회와 각 부서에 우송하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1979년 6월 23일부터 개최된 ALA 연차대회 2

27) Louise S. Robbins, *Censorship and the American Library :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s Response to Threats to Intellectual Freedom, 1939-1969*. Westport, Connecticut and London, 1996. p.137.

28) 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Intellectual Freedom Manual*, 5th ed.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6. p.18.

29) 塩見昇, “ALA「圖書館의 權利宣言」의改訂 : その経過と改正點についての一考察,” 《圖書館と自由》, 第4集(1981), p.56.

30) 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Intellectual Freedom Manual*, 5th ed.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6. p.14.

일체에 도서관 권리선언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공청회는 75명이 참가하였고 事前에 43건의 의견이 문서로 위원회에 접수되었다.³¹⁾ 공청회와 수정작업을 거쳐 드디어 1980년 1월 23일 ALA 평의회는 IFC가 제출한 도서관 권리선언(Library Bill of Rights) 개정안을 승인하여 채택하였다. 이 개정안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도서관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는데, 1996년 1월 23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권리선언의 원문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그러면, 1980년에 개정된 권리선언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²⁾

① 1980년의 개정에서 가장 큰 변경은 지적자유를 유지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1967년 권리선언에서는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교육하는 기관(institution of education for democratic living)」이라고 하던 것을 「정보와 사상을 위한 광장(forums for information and ideas)」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에 대하여 지적자유위원회 위원장인 Francis C. Dea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도서관은 어떠한 의견과 견해에 대해서도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forums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도서관은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교육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도서관이 반민주주의적인 자료를 검열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 지적자유 관점에서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라 미국헌법 제1조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즉, 다수가 싫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소수의 견해는 경청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② 이 권리선언이 모든 종류의 도서관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취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1967년의 권리선언에서 공공도서관에 적당한 표현을 모든 도서관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즉, 제1조의 「community」를 「the community the library serves」로 바꾸고, 제3조에서 「public」을 삭제하였다.

③ 제1조에서 저자의 개념을 확대하기 위하여 「author」를 「contributing to their contribution」으로 바꾸어 자료가 배제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열거하는 것을 피하고 「出生, 배경, 견해」로 포괄적으로 표현하였다. 왜냐 하면, 자료가 배제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열거하게 되면 역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를 배제하거나 제한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제2조에서 시사적인 문제(current issue)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문제(historical issue)도 포함하고 있다.

⑤ 제3조에서는 검열에 도전하는 주체가 도서관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어를 libraries

31) 塩見昇, “ALA「圖書館の權利宣言」の改訂 : その經過と改正點についての一考察,” 《圖書館と自由》, 第4集(1981), p.59.

32) 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Intellectual Freedom Manual*, 5th ed.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6. pp.15-16.

로 수정하였다.

⑥ 제5조에서 성차별에 관련된 표현을 수정하기 위하여 「because of his age, ...」에서 「his」를 삭제하였다

⑦ 제6조에서 회의실(meeting room)과 전시실(exhibit spaces)의 이용에 대해서는 도서관의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도서관측에서 반민주적이라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으로 유익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이용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검열하지 못하도록 표현을 수정하였다.

2. 일본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도서관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여러 가지 출판통제와 언론탄압이 계속되었다.

근세에 와서 가장 대표적인 출판통제는 1722년 幕府時代 말기에 발표된 출판통제의 기본법이 된 「出版條目」이다.³³⁾ 이 「出版條目」에 의해서 금서로 지정하는 조건은

- ① 모든 책을 대상으로 엉터리나 異說 등이 포함된 책
- ② 好色本
- ③ 유명한 가문의 혈통과 조상에 대한 것을 기록한 책
- ④ 저자나 출판사의 실명이 기록되지 않은 책
- ⑤ 徳川家康을 비롯하여 將軍家의 사실을 기록한 책 등 5가지이다.³⁴⁾

결국, 幕府支配體制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금지나 탄압의 대상이 된 것이다. 실제로 학설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책이거나 해외의 사정을 소개하기 위한 책 혹은 외국의 종교에 대하여 언급한 책은 모두 탄압대상으로 취급하여 그 책을 불태우고 저자를 감옥에 보내는 일이 자주 있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일본에서 언론탄압을 위한 조치로는 明治政府가 신문 외의 간행물을 대상으로 1869년에 발표한 「出版條例」가 있고, 이어서 신문을 대상으로 1875년에 공포한 「新聞紙條例」와 「참방률(讒謗律)」이 있다. 이후 이러한 법률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여 1893년에 「出版條例」가 「出版法」으로 개정되었고, 1909년에는 「新聞紙條例」가 「新聞紙法」으로 개정되어 이 두 가지 법률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일본의 학계와 언론계를 지배하여 왔다. 이 법률에 의한 게재금지 사항으로서는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고 정치체제를 변혁하거나 朝廷의 법규를 문란하게 하는 사항」과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풍속을 저해하는 사항」 등이다.

33) 古賀節子 外, 『圖書館資料論』, 東京: 樹村房, 1983. p.36.

34) Loc. cit.

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은 연합군총사령부(사실상은 미군)의 지배 하에서 또 다시 언론탄압을 받게되었다. 미군은 신문, 잡지, 라디오의 사전검열을 실시하였으며, 1945년 9월 19일에는 각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출판법(Press Code)」을 발표하고 신문과 출판에 대한 지도와 통제 그리고 검열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법규는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보도는 진실을 밝힐 것, 공공의 안녕을 문란하게 하는 사항, 연합국 또는 점령군에 대한 파괴적인 비판 또는 불신감과 원한을 초래하는 사항의 게재금지 등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법규는 신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간행물에 적용되어 6년반의 점령기간중 일본의 언론과 출판에 대한 최고의 법규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엄격한 출판통제 하에서 도서관의 소장도서는 모두 관청에서 허가한 출판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발행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시국의 변화에 따라서 검열대상이 되어 탄압의 대상이 된 것도 적지 않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격렬하였던 1940년 이후에는 경찰에서 빈번하게 열람금지도서를 통지하였는데, 도서관측에서는 이 통지에 근거하여 해당도서의 열람을 금지시켰다. 이외에도 도서관의 자기검열에 의해 열람을 금지시킨 도서도 있었다.

(1) 1954년의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일본에서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이 성립된 과정을 보면, 문제의 발단은 1952년에 개최된 九州大會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2년 5월 20일에 일본도서관협회의 평의원회가 열리고, 5월 21에는 협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어서, 戰後 제5회 전국도서관대회가 九州의 福岡市에서 개최되었다.³⁵⁾

당시의 협회 사무국장인 有山崧(1911~1969)의 기록에 의하면 ³⁶⁾ 전국도서관대회에서 「破壞活動防止法」³⁷⁾에 대하여 반대의 결의를 하자는 움직임이 일부 있었다. 그러나, 전국

35) 森耕一, “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宣言 : 成立までの經過,” 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調査委員會, 『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宣言の成立』,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75. p.9

36) 有山崧, “破防法,” 《圖書館雜誌》, 第46卷, 第7號(1952. 7), p.191.

37) 「破壞活動防止法」은 일본정부가 미군정 하에서 治安立法과 勞働三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團體等規正令」을 대신하는 것으로 1952년 4월 17일 국회에 제출한 법률이다. 이 법안의 성립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9년 중국혁명, 1950년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긴박해진 극동정세에 의하여 1951년 San Francisco에서 「講和條約」과 「日美治安保障條約」이 조인되었다. 이 두가지 조약이 1952년 4월 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占領法規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점령법규라고 하는 것은 점령정책 수행을 위하여 연합군최고사령관이 指令을 내리는 법규로써 통상적인 입법수속을 거치지 않고 모든 법률이나 명령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講和條約의 발효와 함께 일련의 占領法規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일본정부에서는 1951년 5월에 그 대책의 일환으로 「破壞活動防止法」을 국회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이 법안은 노동자를 비롯하여 진보적인 문화인, 학생, 학술회 회원, 언론계, 예술가, 법조계 등에서 반대운동을 시작하였다. 반대의 이유는 이 법안의 내용이 적용의 여하에 따라서 언론과 출판, 사상 등 모든 표현의 자유와 結社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52년 4월 28일 「講和條約」은 발효되고, 이어서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부활한 노동절 중앙집회는 1946년부터 1950년까지 皇居前 광장에서

도서관대회에서 「破壞活動防止法」은 논의되지 못하였다. 왜냐 하면, 그것은 도서관의 중립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도서관계가 정치적인 문제나 사상에 대한 문제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952년 당시의 일본도서관협회 사무국장인 有山의 주장은 도서관계가 「破壞活動防止法」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는 것은 엄격하게 경계되어야 하며, 도서관이 진정한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면 도서관은 일체의 정치나 사상으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중립성을 파기하고 직접 정치나 사상의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그 자체가 도서관의 중립성에 대한 自己侵犯이며 자살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이다.³⁸⁾

이와 같은 有山 사무국장의 생각은 얼핏보면 소극적인 것 같지만 반드시 소극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道德律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도 아니고 특정 종교, 특정 정치사상과 신조, 특정 학문적 주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도 아니기 때문이다.³⁹⁾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본도서관협회의 기관지인 「圖書館雜誌」 편집부에서는 有山 사무국장의 발언을 수용하여 1952년 8월호에 「圖書館と 中立」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지상토론을 제안하였다.⁴⁰⁾

도서관의 중립성에 대한 제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도서관이나 도서관원이 어떤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중립을 지킬 것인가 혹은 중립을 지킬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먼저 경찰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열람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열람표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 해도 열람표를 제출할 것인가? 도서관은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는 행위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경우 도서관원은 단호하게 거부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인데, 일본 공산당 기관지인 「あかはた(赤旗)」를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경찰의 압력이 있는 경우, 도서관은 이것을 거부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총괄적인 문제인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최되었으나 1950년 5월 30일의 인민결의대회에서 미군병사가 폭행을 당한 사건 이후 皇居前 광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1951년의 노동절 행사는 부득이 분산해서 개최하게 되었다. 1952년 東京의 중앙 노동절 행사는 明治神宮 外苑에서 개최되었는데, 행사가 끝난 후 수천명의 데모대와 5,000명의 경찰관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노동자 1명이 사살되고, 데모대와 경찰관 여러 명이 중경상을 입게 되었다. 이 사건의 결과로 치안입법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破壞活動防止法」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국도서관대회가 개최된 것이다.

38) 森耕一, “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宣言: 成立までの經過,” 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調査委員會, 『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宣言の成立』,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75. p.10.

39) 古賀節子 外, 『圖書館資料論』, 朴俊植, 孫文哲 共譯. 大邱: 啓明大學校 出版部, 1987. p.84.

40) 編輯部, “圖書館と中立についての討論を提案する,” 『圖書館雜誌』, 第46卷, 第8號(1952. 8), pp.214-215.

해야 할 것인가? 등의 예를 들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예를 들어본 문제에 대하여 도서관은 중립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중립은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또한, 동일한 「圖書館雜誌」 8월호에 中村光雄이 「만약 사상문제에 대하여 경찰이 열람증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관내에서 토의하여 도출된 4가지의 의견과 투고자 본인의 의견을 진술한 것을 게재하였다.⁴¹⁾

이 지상토론은 「圖書館の抵抗線」이라고 하는 표제 아래 1952년 10월호부터 1953년 3월호까지 5회에 걸쳐 계속되었다. 그 사이 편집부는 1953년 1월호에 중립성에 대하여 다시 제안하고 있다.⁴²⁾ 그 내용은 전반적인 것으로 이미 발표된 여러 가지 중립성 논의에 대하여 도서관활동을 통해서 체험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안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중립을 지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나 중립을 지킬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해 보면 올바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었다.

당시의 중립성 논쟁은 도서관활동의 실태와는 거리가 먼 관념적인 것이었으며, 중립 그 자체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논의, 평화의 추구나 민중에 대한 봉사를 추상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어떻게 하면 자유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실천적인 과제에 대한 노력은 없었다.⁴³⁾

한편, 중립성 논쟁의 초기에 K씨는 신문의 경우 윤리강령을 만드는 것과 같이 도서관계에서도 「圖書館倫理綱領」을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도서관은 모든 자료수집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는 것을 圖書館雜誌 1952년 10월호에서 주장하였다. 이 주장에 동조하여 草野正名이 圖書館雜誌 1952년 12월호에 미국의 「도서관 권리선언」을 소개하였다.⁴⁴⁾

그리고 圖書館雜誌 1953년 2월호 뉴스에 의하면, 1952년 11월 30일 熊谷에서 개최된 埼玉縣圖書館大會에서 「圖書館憲章(가칭)」제정의 필요성을 결의하고 일본도서관협회에 「圖書館憲章」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일본도서관협회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1952년 12월 17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서관 헌장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裏田武夫는 圖書館雜誌 1953년 6월호에 「圖書館員の立場」이라는 기사에서 검열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검열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명백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완전하게 뿌리를 내린 도서관학은 존재할 수 없다」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일본도서관협회에 대해서는 지적자유옹호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구체적인 문제를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⁵⁾

41) 中村光雄, “閱覽証をめぐる問題,” 《圖書館雜誌》, 第46卷, 第8號(1952. 8), p.230.

42) 編輯部, “中立性について再提案す,” 《圖書館雜誌》, 第47卷, 第1號(1953. 1), p.7

43) 塩見昇, 天満隆之輔, “圖書館の自由: とくに「中立性論争」について,” 《圖書館界》, 第23卷, 第1號(1971. 5), p.21.

44) 森耕一, “圖書館の自由に関する宣言: 成立までの經過,” 圖書館の自由に関する調査委員會, 『圖書館の自由に関する宣言の成立』,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75. p.11.

45) 裏田武夫, “圖書館員の立場,” 《圖書館雜誌》, 第47卷, 第6號(1953. 6), pp.170-174.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53년 6월 1일 일본도서관협회 총회에 「圖書館 憲章」 제정에 관한 안건이 제안되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는 후에 찬반토론이 있었다. 반대 의견은 헌법이 있고, 교육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圖書館 憲章」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찬성하는 주장도 많이 있어 표결에 붙인 결과 「圖書館 憲章」을 제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다. 그래서 1953년 7월 14일 상임이사회에서 「도서관헌장 확대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위원은 도서관법 개정위원회와 圖書館雜誌에 중립성에 대한 기사를 투고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기로 결정하였다.⁴⁶⁾

도서관헌장 제정위원회가 준비한 「圖書館 憲章」 초안은 미국도서관협회와 미국출판인 협의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독서의 자유」 그리고 유네스코 「공공도서관선언」과 함께 圖書館雜誌 1953년 10월호에 발표되었고,⁴⁷⁾ 동시에 초안에 대한 字句 수정, 내용의 개선 혹은 별도의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초안에 대하여 3명의 개인과 5개의 단체로부터 의견이 개진되고, 대안이 제시되었다.⁴⁸⁾ 의견과 대안의 요지는 앞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행동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서관계는 미약한 단체이기 때문에 「도서관 자유위원회」와 같은 전국적인 조직을 결성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와중에 埴岡信夫⁴⁹⁾와 男澤淳⁵⁰⁾은 미국의 도서관 자유에 대한 사정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지적자유에 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소개한 것은 圖書館雜誌 1954년 5월호에 게재된 「ALAと知的自由」이다.

이렇게 해서 과거 2년간 圖書館雜誌를 통하여 논의된 중립성 논쟁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1954년도의 전국도서관대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1954년 전국도서관대회는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계속되었는데, 첫째 날 첫 번째 안건으로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이 채택되어 有山 사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다. 제안설명에서 도서관의 자유는 도서관이나 도서관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중의 알 자유를 옹호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도서관의 자유를 문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참가자 모두가 아직 초안에 대해서

46) 森耕一, 「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宣言 : 成立までの經過」, 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調査委員會, 『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宣言の成立』,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75. p.12.

47) 圖書館憲章 制定委員會, 「『讀書の自由』を守るために」, 《圖書館雜誌》, 第47卷, 第10號(1953. 10), pp.298-302.

48) 熊本縣公共圖書館長會議, 「意見」, 《圖書館雜誌》, 第47卷, 第12號(1953. 12), p.376 ; 大分縣公共圖書館長會議, 「代案」, 《圖書館雜誌》, 第47卷, 第12號(1953. 12), p.376 ; 關正, 「意見」, 《圖書館雜誌》, 第47卷, 第12號(1953. 12), pp.376-377 ; K 生, 「意見と代案」, 《圖書館雜誌》, 第47卷, 第12號(1953. 12), p.377 ; 福岡縣公共圖書館協議會, 「意見」, 《圖書館雜誌》, 第48卷, 第1號(1954. 1), p.9 ; 大分縣立圖書館職員, 「贊成」, 《圖書館雜誌》, 第48卷, 第1號(1954. 1), p.9 ; 草野正名, 「代案」, 《圖書館雜誌》, 第48卷, 第1號(1954. 1), p.9 ; 鹿兒島縣圖書館協會, 「贊成」, 《圖書館雜誌》, 第48卷, 第1號(1954. 1), p.9.

49) 埴岡信夫, 「問題になったボストン公共圖書館の中立性」, 《圖書館雜誌》, 第47卷, 第4號(1953. 4), pp.14-16.

50) 男澤淳, 「『マッカ-シ旋風』をどうする : アメリカ版『圖書館の中立性』」, 《圖書館雜誌》, 第47卷, 第9號(1953. 9), pp.7-9.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토론과 표결을 대회 마지막 날인 28일로 연기하자는 요청이 있어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 2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서再開된 28일의 전체회의에서 다시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이 토의되었다. 의사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요점을 정리할 수 있다.⁵¹⁾

- ① 副文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기 때문에 主文에 대해서만 결의하도록 한다.
- ② 마지막 부분 「우리들은 단결해서 關係諸方面과의 협력하에 저항한다」는 표현에서 「關係諸方面과의 협력」은 필요가 있는가?
- ③ 「저항한다」는 표현은 좋은가?

이상의 문제에 대하여 장시간 토의를 거친 후에 구체적인 처리와 실행에 대한 것은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이사장에게 일임한 후에 자유선언에 대한 토의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도서관의 자유라고 하는 큰 문제를 실천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출발점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면, 1954년 5월 28일에 개최된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채택된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의 全文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써 「지적 자유」를 가진 민중에게 자료와 시설을 제공하는 일은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도서관은 이와 같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도서관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실천한다.

1. 도서관은 자료수집의 자유를 가진다.
2. 도서관은 자료제공의 자유를 가진다.
3. 도서관은 모든 부당한 검열에 반대한다.

도서관의 자유가 침해될 때 우리들은 단결하여 끝까지 자유를 수호한다.

1954년 5월 28일 1954년도 전국도서관대회에서 결의

1954년 전국도서관대회에서 토론한 결과 主文의 마지막 부분에서 원래는 「우리들은 단결하여 여러 관계분야와 협력하여 저항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우리들은 단결하여 끝까지 자유를 수호한다」로 수정하여 主文으로 채택되고 해설부분인 副文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1954년의 선언은 미국의 1948년 도서관 권리선언을 기초로 하여 만들었으나⁵²⁾ 이상에

51) 森耕一, “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宣言 : 成立までの經過,” 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調査委員會, 『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宣言の成立』,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75. pp.14-15.

52) 古賀節子 外, 『圖書館資料論』, 東京: 樹村房, 1983. p.41.

서 제시한 바와 같이 3가지의 기준을 제시한 主文만 채택되고 副文이 채택되지 못하였다. 主文은 지나치게 간결할 뿐만 아니라 副文이 채택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도서관의 자유가 침해되는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침이 되지 못하였다.

(2) 1979년의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1954년에 도서관 권리선언이 채택되었으나 이 선언은 단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여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想起하고 재확인하는 이념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도서관의 자유선언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일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실천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의 자유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⁵³⁾

일본의 도서관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1963년 「中小都市における公共圖書館の運營」을 간행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1965년 日野市立圖書館의 개관으로 시작된 도서관봉사의 발전은 대출을 중심으로 한 자료제공이 주된 것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1967년 7월에 NET 텔레비전이 제작한 텔레비전 드라마의 시나리오 가운데 도서관의 대출카드를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도서관계에서는 이 시나리오의 수정을 요구한 이른바 練馬텔레비전 사건이 발생하여, 도서관의 일상적인 활동인 대출은 도서관의 자유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도서관봉사에서 중요한 사실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 인식은 그 후 1974년 東村山市에서 도서관 설치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 속에 「이용자의 비밀을 지킬 의무」를 포함시키는 데까지 발전하였다.⁵⁴⁾

한편, 1973년 10월 18일 高知市에서 개최된 전국도서관대회 총회에서는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을 재확인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은 1973년 8월 山口縣立 山口圖書館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山口圖書館은 1973년 7월 23일에 新館 개관식을 거행하였는데, 이로부터 약 1개월 후인 8월 28일에 舊館時代에는 개가식으로 취급하였던 反戰平和問題 관계도서 등 50여권의 도서를 종이 상자에 넣어 서가 한쪽구석에 방치하여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두었던 것이 이용자의 지적에 의해 밝혀졌는데, 이 사건은 도서관의 자료제공의 자유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⁵⁵⁾ 다음 날인 8월 29일 朝日新聞과 毎日新聞에서 이 사

53) 圖書館の自由に関する調査委員會, 『圖書館の自由に関する宣言 : 1979年改訂』,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79. pp.12-13.

54) 圖書館の自由に関する調査委員會, 『「圖書館の自由に関する宣言 1979年改訂」解説』,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87. p.11.

55) 圖書館の自由に関する調査委員會, 『「圖書館の自由に関する宣言 1979年改訂」解説』,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87. p.11.

건을 보도하게 되자 山口圖書館의 어떤 과장은 신문기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사상, 종교 등 편향된 서적을 이용자에게 대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移轉을 계기로 도서관의 중립성을 해치거나 미풍량속을 저해하는 것은 나의 판단에 따라 뽑아 냈다. 조만간 연구자의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바쁜 업무로 인하여 잊고 있었다」고 해명하였다.⁵⁶⁾

이 사건이 보도되자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하였는데, 출판평론가인 美作太郎은 「도서관의 중립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도서관인이 등장하였다」고 비판하였고, 역사학자인 林英夫는 「그들이 말하는 위험한 사상이 수록되어 있는 도서관의 구입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수집의 자유에 대한 자기규제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⁵⁷⁾

이 사건은 우연히 山口에서 발생하였지만 단순히 山口圖書館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전국 어느 도서관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만한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더구나, 1973년부터 1974년까지 도서관의 자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일본도서관협회 회원들 사이에 미국도서관협회의 지적자유위원회와 같이 도서관에서 독서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한번 제기되었다. 당초 1954년의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을 때, 대회가 끝난 후 일본도서관협회 총회에서 선언의 실천방법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설치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것은 일본도서관협회의 중대한 실수였다. 어떠한 제도이든지 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특히 도서관과 같이 힘이 약하고 결집력이 부족한 조직에서는 더욱더 강제력을 발휘하고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실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본도서관협회에서는 1974년이 되어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위원회는 ① 선언의 취지를 홍보하고 ②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행하며 ③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규정의 제정, 위원의 인선을 거쳐서 1975년 3월에 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하였다.⁵⁸⁾

이 위원회에서는 1954년 선언채택 당시에 유보된 副文案을 개정하여 채택함으로써 선언을 일상적인 도서관활동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면과제로 삼았다.

돌이켜 보면 1954년의 선언은 거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想起하고 재확인하는 이념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실천의 중심이 되는 위

56) 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調査委員會, 『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宣言 : 1979年改訂』,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79. pp.11.

57) 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調査委員會, 『「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宣言 1979年改訂」解説』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87. p.11.

58) 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調査委員會, 『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宣言 : 1979年改訂』,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79. pp.12.

원회 같은 조직을 가지지 못하였다. 원래 1954년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채택된 선언은 案의 단계에서는 主文과 副文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못하여 대회에서는 主文 만이 채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主文 만으로는 선언이 지나치게 간결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도서관의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선언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954년에 채택된 선언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위원회에서는 1976년 5월부터 副文案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개정작업의 1단계로서 『圖書館雜誌』 1976년 9월호(제70권, 제9호)에 副文案의 문제점과 개정의 大綱을 발표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어서 1976년 전국도서관대회의 제4분과회와 1977년 2월에 大阪에서 개최된 副文 검토회에서 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위원회는 새로운 副文案을 『圖書館雜誌』 1977년 9월호(제71권, 제9호)에 발표함과 동시에 1977년의 전국도서관대회 제4 분과회에서 검토를 부탁하였다. 이러한 의견과 검토의 결과에서 나온 내용을 참고로 하여 다소 수정한 副文(제2초안)을 『圖書館雜誌』 1977년 12월호(제71권, 제2호)에 공표하고 광범위한 토론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東京, 大阪, 福岡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圖書館問題研究會, 大學圖書館問題研究會 등 전문연구단체의 집회에서도 副文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경과를 거쳐 1978년 3월 22일 이사와 평의원으로 구성된 副文(제2초안)에 대한 검토회를 개최하였다. 이 검토회에서 나온 의견 중에는 몇 가지 사안에서 의견이 대립되어 보다 광범위한 토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⁵⁹⁾

위원회로서는 일본도서관협회의 1978년 정기총회에 副文案을 상정할 예정으로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검토가 아직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의 토의 참가를 촉진하고 논의를 보다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총회에 제안하는 것을 1년 정도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이미 20년 이상 경과된 1954년 宣言에 대해서도 수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고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었다.

그래서 이후의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副文 만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 그 자체에 대해서도 개정하게 되어 『圖書館雜誌』 1978년 8월호(제72권, 제8호)에 선언 개정 제1차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 제1차안은 개인은 물론 도서관관계단체의 집회 등에서 검토가 이루어졌고, 전국도서관대회의 제3분과회에서도 토의가 되었다. 이 제1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한 것은 22통, 사항별로는 240 건 이상에 이르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단히 다양하였다.⁶⁰⁾

이어서, 1978년 11월 18일과 19일 양일간 大阪에서 개최된 전국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59) 圖書館の自由に関する調査委員會, 『圖書館の自由に関する宣言 : 1979年改訂』,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79. pp.13.

60) 圖書館の自由に関する調査委員會, 『圖書館の自由に関する宣言 : 1979年改訂』,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79. pp.14.

개정 제1차안에 대하여 개진된 의견을 모두 신중하게 심의하고 검토하여 최종 개정안을 정리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안은 1978년 12월에 이사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圖書館雜誌」 1979년 2월호(제73권, 제2호)에 발표하였다. 이 안에 대하여 다시 회원들에게 수정의견을 요구한 결과 문서로 개진된 의견은 13통, 사항별로는 80건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래서, 1979년 3월 27일 공개 검토회를 개최하여 수정의견 전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이렇게 검토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일부 수정된 안은 1979년 3월 28일에 개최된 평의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승인되었다.

그래서, 1979년 개정안은 1979년 5월 30일에 개최된 일본도서관협회 정기총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것이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1979년 改訂」으로 1954년에 최초로 선언이 제정된 후 만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 탄생한 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 1979년에 개정된 선언의全文은 부록으로 수록해 두었다.

이렇게 1979년에 개정된 선언은 25년간 도서관계의 경험을 집약하고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것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특징을 들 수 있다.⁶¹⁾

- ① 선언의 기초는 일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기초를 두고 있다.
- ②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사항을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하여 主文에 새로 삽입하였다.
- ③ 主文 만이 아니라 선언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副文도 함께 채택하였다.
- ④ 전국 도서관인들의 조직체인 일본도서관협회에 의해서 채택되었기 때문에 차후로 이 宣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안정된 기초를 확보하였다.

그러면, 1979년에 개정된 선언의 내용을 1954년의 선언과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기로 한다.⁶²⁾

① 1954년 선언에서는 「도서관의 이와 같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도서관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실천한다」라고 도서관인이 주어가 되었는데, 1979년 개정에서는 도서관인이 아니라 도서관을 주어로 하였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도서관의 자유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도서관원의 윤리강령」의 제정이 검토되고 있었고 가까운 미래에 채택될 예정이었다. 이 윤리강령에서는 당연히 도서관원이 主語이기 때문에 선언에서는 도서관을 主語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알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도서관원 개개인의 문

61) 圖書館の自由に関する調査委員會, 『「圖書館の自由に関する宣言 1979年改訂」解説』,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87. p.12.

62) 圖書館の自由に関する調査委員會, 『圖書館の自由に関する宣言: 1979年改訂』,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79. pp.15-36과 圖書館の自由に関する調査委員會, 『「圖書館の自由に関する宣言 1979年改訂」解説』,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87. pp.17-38에서 정리한 것임.

제가 아니라 도서관이라고 하는 기관이 총체적으로 대처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는 인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1954년 선언에서는「알 자유를 가진 민중」이라는 표현으로 도서관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정신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는데, 1979년 개정에서는 이것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민중」이라는 표현을 「국민」으로 대체함과 동시에 도서관 자유의 근거는 일본국 헌법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의 규정에 있다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③ 1954년 선언은 전체적으로 도서관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도서관의 중립성이란 어떤 사상이나 정보에 편향됨이 없이 여러 가지 입장의 사상을 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사상이나 경향을 배제하고 온건하고 중립적인 내용의 자료만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1979년 개정에서는 도서관의 중립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왜냐 하면, 국민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다종다양한 정보와 사상을 요구하고 수용할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도서관은 국민의 알 자유를 보장하는 책임을 지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④ 수집방침에 대하여 1954년 선언의 副文案에서는 중립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가능한 한 널리 편향되지 않게 자료를 수집해 둘 필요가 있고」, 「자유롭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선택하고 수집한다」고 기술하였으나, 1979년 개정에서는 성문화된 수집방침을 마련하여 이것을 「공개하여 널리 사회로부터 비판과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여 수집방침을 전면에 내 세운 것이 특징이다.

⑤ 이용자의 비밀유지에 대한 문제는 1954년 선언의 副文案에서는 검열반대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979년 개정에서는 이것을 독립시켜 主文의 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당시에 경찰의 수사활동과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가 각지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⑥ 1954년 선언에서는 자료의 보존에 대하여 명문화된 내용은 없었으나 1979년 개정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였다. 이것은 국민의 모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은 자료를 보존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용을 제한해야 할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이 자료를 바로 폐기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미리 인식시켜 준 것이다.

⑦ 1954년 선언의 主文에서 「도서관은 모든 부당한 검열에 반대한다」라는 표현을 1979년 개정에서는 「부당한」을 삭제하여 헌법 제21조 2항의 검열금지의 규정과 일치시켰다. 잘못하면 검열에는 부당한 것과 정당한 것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부당한 검열에 대해서만 반대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미 헌법에 「검열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열이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사고가

이미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표현을 삭제한 것이다.

3. 한국

우리나라는 도서관 권리선언이나 자유선언은 없다. 다만, 1967년 대구에서 개최된 제 3 회 전국공공도서관회의에서 「도서관 헌장」을 채택한 바 있다.⁶³⁾ 「도서관 헌장」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 헌장

인류문화의 유산을 보호하고 새 문화 창조의 온상인 도서관의 사회성과 공익성을 재확인하면서 1967년 4월 6일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 공공도서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그 원칙을 천명한다.

1.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공정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
2. 도서관은 모든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케 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이바지한다.
3. 도서관은 생활인의 터전으로써 지역사회 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4. 도서관은 평생교육기관으로써 자주자활할 수 있는 시민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한다.
5. 도서관은 국제문화의 교량으로써 상호간의 우의와 이해증진에 이바지한다.

위에서 소개한 우리나라의 도서관 헌장은 권리선언이나 자유선언과는 거리가 멀다. 수집의 자유, 제공의 자유, 검열에 대한 도전 등 권리선언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가 전혀 반영된 것이 없다. 다만, 공공도서관의 사회성과 공익성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내용은 논의대상이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IV. 미국과 일본의 도서관 권리선언의 비교분석

1. 도서관 권리선언의 내용

도서관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도서관의 권리선언에 포함되어야 하느냐가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먼저 미국과 일본의

63) 張仁植, 『公共圖書館』,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71. pp.45-46.

도서관 권리선언의 구성과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미국의 도서관 권리선언 내용

미국의 도서관 권리선언은 도서관계를 대표하는 공식기구인 미국도서관협회에서 채택되었다. 그리고, 권리선언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선언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ALA 산하에 지적자유위원회(Intellectual Freedom Committee), 知的自由部(The 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 지적자유회의(The Intellectual Freedom Round Table)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구들은 모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먼저, 1940년에 발족된 지적자유위원회는 지적자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ALA의 정책을 ALA 평의회에 권고하고, 지적자유에 관련된 ALA의 공식입장을 정책이나 해설, 결의, 지침 등의 형태로 채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⁶⁴⁾ 다음으로 1967년에 발족된 知的自由部는 지적자유에 관련된 ALA의 여러 가지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중심기구로서 각종 교육용 출판물과 간행물을 출판하고 있다. 중요한 간행물은 격월간의 *'Newsletter on Intellectual Freedom'*, *'Intellectual Freedom Manual'*, *'Banned Books Week Resource Book'* 등이 있다.⁶⁵⁾ 지적자유회의는 1973년에 발족하였는데, ALA내에서 도서관의 지적자유와 관련된 제반활동, 수행프로그램, 문제가 되는 안건 등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의사소통기구이다.⁶⁶⁾

미국의 도서관 권리선언은 선언(Library Bill of Rights)과 여러 개의 해설(Interpretations)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도서관 권리선언은 1980년에 개정된 것이 가장 최신의 것으로 오늘날까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선언은 전체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을 번역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의 권리선언

미국도서관협회는 모든 도서관은 정보와 사상을 위한 광장이며, 아래의 기본방침은 모든 도서관의 봉사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1. 도서 및 기타 도서관자원은 도서관이 봉사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들의 관심, 정보, 계몽을 위하여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자료는 자료의 창작에 기여한 사람들의 출신, 배경, 견해를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2. 도서관은 시사적인 문제와 역사적인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나타내는 자료와 정

64) Intellectual Freedom Committee, http://ala.org/alaorg/oif/ifc_inf.html

65) About the 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 <http://www.ala.org/alaorg/oif/aboutoif.html>

66) Intellectual Freedom Round Table, http://ala.org/alaorg/oif/ifrt_inf.html

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료는 당파적이거나 이론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금지되거나 제거되어서는 안된다.

3. 도서관은 정보와 계몽을 제공하기 위한 책임을 달성하기 위하여 검열을 거부해야 한다.
4. 도서관은 사상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자유로운 표현의 제한에 저항하는 일에 관련된 모든 개인과 단체들과 협력해야 한다.
5.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한 개인의 권리는 그 개인의 출생, 연령, 배경, 견해 등의 이유로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6. 도서관이 봉사하고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나 집회실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은 시설의 이용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신념이나 소속에 관계 없이 공평한 기준에 따라서 제공해야 한다.

미국의 도서관 권리선언은 자료수집의 자유, 자료제공의 자유, 검열 거부, 관련단체와의 협력, 개인의 도서관이용 권리, 도서관 시설의 이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선언을 보완하고 모호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해설을 마련하고 있는데, 1980년 이전까지는 지적자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권리선언 본문에 해설적 각주를 달아서 권리선언의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설을 채택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 권리선언을 개정한 이후에는 권리선언 본문의 내용을 보완하고 애매한 내용을 명백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ALA 차원의 정책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해설이나 정책 또는 지침을 채택하고 있다.

해설이나 정책 또는 지침은 동시에 채택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여 선언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채택하고 있다.

현재 17개의 해설이 발표되어 있는데, 해설의 주된 내용은 도서관자료와 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공평한 이용을 다룬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ALA가 채택한 해설 전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⁶⁷⁾

- ①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디오테이프와 기타 비인쇄자료에 대한 접근(Acces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to Videotapes and Other Nonprint Materials, 1989. 6. 28 채택, 1991. 7. 3 개정)
- ② 전자정보와 봉사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Access to Electronic Information, Services and Networks, 1996. 1. 24 채택)
- ③ 도서관자료와 봉사에 대한 성차별 없는 접근(Access to Library Resources and Services Regardless of Gender or Sexual Orientation, 1993. 6. 30 채택, 2000. 7. 12 개정)
- ④ 학교도서관매체프로그램에서의 자료와 봉사에 대한 접근(Access to Resources and Services in the School Library Media Program, 1986. 7. 2 채택, 1990. 1. 10, 2000.

67) *Interpretations of the Library Bill of Rights*, <http://www.ala.org/work/freedom/interpret.html>

7. 12 개정)

- ⑤ 이의가 제기된 자료(Challenged Materials, 1971. 6. 25 채택, 1981. 7. 1, 1990. 1. 10 개정)
- ⑥ 장서개발에 있어서 다양성(Diversity in Collection Development, 1982. 7. 14 채택, 1990. 1. 10 개정)
- ⑦ 정보접근에 대한 경제적 장애(Economic Barriers to Information Access, 1993. 6. 30 채택)
- ⑧ 도서관장서에 대한 평가(Evaluating Library Collections, 1973. 2. 2 채택, 1981. 7. 1 개정)
- ⑨ 전시실과 게시판(Exhibit Spaces and Bulletin Boards, 1991. 7. 2 채택)
- ⑩ 도서관자료의 개정(Expurgation of Library Materials, 1973. 2. 2 채택, 1981. 7. 1, 1990. 1. 10 개정)
- ⑪ 미성년자의 도서관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Free Access to Libraries for Minors, 1972. 6. 30 채택, 1981. 7. 1, 1991. 7. 3 개정)
- ⑫ 학술도서관을 위한 지적자유원리(Intellectual Freedom Principles for Academic Libraries, 2000. 7. 12 채택)
- ⑬ 자원으로서의 도서관 시행프로그램 (Library-Initiated Programs as a Resource, 1982. 1. 17 채택, 1990. 6. 26, 2000. 7. 12 개정)
- ⑭ 회의실(Meeting Rooms, 1991. 7. 12 채택)
- ⑮ 도서관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Restricted Access to Library Materials, 1973. 2. 2 채택, 1981. 7. 1, 1991. 7. 3, 2000. 7. 12 개정)
- ⑯ 레이블링 성명(Statement on Labeling, 1951. 7. 13 채택, 1971. 6. 25, 1981. 7. 1, 1990. 6. 26 개정)
- 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편적 권리 (The Universal Right to Free Expression, 1991. 1. 16 채택)

다음으로, 도서관 권리선언을 보완하기 위하여 채택한 정책이나 지침, 결의 그리고 절차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이들의 내용은 접근, 다양성, 윤리, 인터넷, 도서관 자원, 미성년자,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들 중에서 중요한 것만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⁶⁸⁾

- ① 도서관자료와 봉사 그리고 시설의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규정, 절차의 개발과 시행에 관한 지침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Affecting Access to Library Materials, Services and

68) *Intellectual Freedom Statements and Policies*, <http://www.ala.org/alaorg/oif/statementsandpolicies.html>.

Facilities, 1994. 6. 28 채택)

- ②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의 도서관과 정보의 접근에 관한 결의 (Resolution on Access to the Use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by Individuals with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1988. 1. 13 채택)
- ③ 독서의 자유선언(The Freedom to Read Statement, 1953. 6. 25 채택, 1972. 1. 28, 1991. 1. 16, 2000. 7. 12 개정)
- ④ Libraries : An American Value, 1993. 2. 3 채택
- ⑤ 이용자 행동과 도서관 이용에 관한 정책 및 절차 개발을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Policies and Procedures regarding User Behavior and Library Usage, 1993. 1. 24 채택, 2000. 11. 27 개정)
- ⑥ 정부의 위협에 관한 정책(Policy on Governmental Intimidation, 1973. 2. 2 채택, 1981. 7. 1 개정)
- ⑦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개인식별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정책(Policy Concerning Confidentiality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about Library User, 1991. 7. 2 채택)
- ⑧ 도서관 기록의 비밀유지에 관한 정책(Policy on Confidentiality of Library Records, 1971. 1. 20 채택, 1975. 7. 4, 1986. 7. 2 개정)

(2) 일본의 도서관 권리선언 내용

일본의 도서관 권리선언은 미국의 도서관 권리선언을 기초로 한 것인데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이라는 명칭으로 일본도서관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이 선언을 유지·발전시키고 도서관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상설기구인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圖書館と自由」시리즈를 통해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집과 참고자료를 발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의 권리선언은 1979년에 개정된 것으로 미국의 경우와 같이 선언에 해당하는 主文과 해설에 해당하는 副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主文은 전체 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조문별로 副文이 추가되어 있다. 여기에 主文 만을 번역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도서관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알 자유를 가진 국민에게 자료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한다.

이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실천한다.

제1 도서관은 자료수집의 자유를 가진다.

제2 도서관은 자료제공의 자유를 가진다.

제3 도서관은 이용자의 비밀을 지킨다.

제4 도서관은 모든 검열에 반대한다.

도서관의 자유가 침해될 때 우리는 단결해서 끝까지 자유를 지킨다.

일본의 도서관 권리선언의 主文은 자료수집의 자유, 자료제공의 자유, 이용자의 비밀유지, 검열 거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副文은 미국처럼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해설, 정책, 지침 등의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主文의 내용을 보완하여 도서관의 자유를 보다 명백하게 규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달리 채택한 정책이나 지침은 없는 것이 특징이다.

2. 도서관 권리선언의 구성요소 비교분석

도서관의 권리선언은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어떤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의 권리선언의 변천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살펴 본 것을 기초로 구성요소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분석의 대상은 미국의 1980년 도서관 권리선언과 일본의 1979년 도서관 권리선언으로 하며, 권리선언 이외의 해설, 정책, 지침 등도 그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의 <표 1>은 미국과 일본의 도서관 권리선언의 구성요소를 분석한 것이다.

<표 1> 미국과 일본의 도서관 권리선언의 구성요소

구분		미국	일본	비 고
채택기관		미국도서관협회	일본도서관협회	○ : 선언 ◎ : 해설 ● : 정책
관리유지기구		지적자유위원회 지적자유부 지적자유회의 등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조사위원회	
내 용	자료수집의 자유	○	○	
	자료제공의 자유	○	○	
	검열 거부	○	○	
	관련단체와의 협력	○	◎	
	개인의 도서관이용 권리	○	◎	
	도서관의 시설 이용	○	◎	
	이용자의 비밀유지	●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 공히 채택기관은 도서관계를 대표하는 공식 기구인 도서관협회이고, 도서관 권리선언을 관리하고 유지하며, 도서관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도서관 권리선언의 내용 중에서 선언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검열 거부 등의 내용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관련단체와의 협력, 개인의 도서관이용 권리, 도서관의 시설 이용에 대한 내용이 선언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모두 해설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용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은 일본은 선언에 해당하는 主文에 포함되어 있으나 미국은 별도의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의 도서관 권리선언의 내용을 분석하여 구성요소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7가지의 공통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① 자료수집의 자유 : 모든 도서관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자료제공의 자유 : 모든 도서관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검열 거부 : 도서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검열의 거부에 필요한 사항
- ④ 관련단체와의 협력 : 도서관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개인이나 관련단체와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
- ⑤ 개인의 도서관이용 권리 : 모든 국민이 도서관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⑥ 도서관의 시설이용 : 도서관의 회의실이나 전시실 등 제반시설을 개인이나 단체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
- ⑦ 이용자의 비밀유지 :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도서관의 이용기록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도서관 권리선언을 제정할 경우 이상과 같은 7가지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V. 요약 및 결론

도서관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여 모든 도서관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지식과 정보의 광장이다. 그래서, 도서관은 이용자의 자유로운 자료이용과 접근을 제약하는 도서관 내외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모든 이용자의 정보이용과 접근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도서관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기관에서 도서관의 권리선언을 채택하여 도서관의 자유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은 1930년대, 일본은 1950년대에 이미 도서관의 권리선언을 채택하여 도서관의 자유를 지켜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미국의 도서관 권리선언은 미국도서관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으며, 권리선언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적자유위원회, 지적자유부, 지적자유회의 등의 상설 기구를 ALA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② 미국의 도서관 권리선언은 선언과 선언을 보완하기 위한 해설, 정책, 지침 등을 별도로 채택하고 있다.
- ③ 일본의 도서관 권리선언은 일본도서관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으며, 권리선언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협회 산하에 공식 상설기구인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④ 일본의 도서관 권리선언은 선언에 해당하는 主文과 해설에 해당하는 副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과 같이 해설, 정책, 지침 등 별도로 채택한 것은 없다.
- ⑤ 미국과 일본의 도서관 권리선언의 공통적인 구성요소는 자료수집의 자유, 자료제공의 자유, 검열 거부, 관련단체와의 협력, 개인의 도서관이용 권리, 도서관의 시설 이용, 이용자의 비밀유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도서관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서관 권리선언을 채택하고, 권리선언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공식기구를 설치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도서관의 권리선언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보다는 국가의 안보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민주화 투쟁의 성과로서 최근의 사법적 판례를 보면 직접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는 분야로부터 표현의 자유개념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부분적인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⁶⁹⁾ 그리고,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서관협회는 이제 도서관 권리선언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 지적자유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69) 정현태, 『공공도서관의 지적자유』,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2. p.39.

참고문헌

- 곽주원,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도서관의 책무.” 《시민과 도서관》, 제2권, 제2호 (2001. 6), pp.19-29.
- 정현태. 『공공도서관의 지적자유』.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2.
- 정현태. 『공공도서관의 지적자유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2
- 정현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지적자유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4권, 제1호(2000. 3), pp.243-264.
- 古賀節子 外. 『圖書館資料論』. 東京 : 樹村房, 1983.
- 久保輝巳. 『圖書館資料論』. 東京 : 白石書店, 1978.
- 堀部政男. “圖書館の自由と知る權利.” 《法律時報》, 第52卷, 第11號(1980. 11), pp.27-32.
- 男澤淳. 『圖書館と情報』. 東京 : 明星大學 出版部, 1986.
- 男澤淳. “ALA「圖書館憲章」の變遷について.” 《現代の圖書館》, 第15卷, 第4號(1975. 12), pp.149-152
- 大瀧則忠. “カナダ圖書館界における知的自由の歴史 : 知的自由宣言の變遷を中心とした覚え書.” 《現代の圖書館》, 第18卷, 第3號(1980. 9), pp.141-147.
- 大瀧則忠. “圖書館員による知的自由の組織 : アメリカ圖書館協會の活動にみる.” 《圖書館雜誌》, 第70卷, 第9號 (1976. 9), pp.364-369.
- 渡邊重夫. 『圖書館の自由と知る權利』. 東京 : 青弓社, 1989.
- 渡邊重夫. “圖書館と知的自由.” 《圖書館界》, 第53卷, 第3號(2001. 9), pp.191-200.
- 圖書館の自由に関する調査委員會. 『圖書館と自由をめぐる事例研究 : その 1』.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78.
- 圖書館の自由に関する調査委員會. 『圖書館と自由をめぐる事例研究 : その 2』.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81.
- 圖書館の自由に関する調査委員會. 『「圖書館の自由に関する宣言」二十年の歩み : 1954-1972』.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83.
- 圖書館の自由に関する調査委員會. “「圖書館の自由に関する宣言」解説文作成について : 1954年「副文」案の改訂のために.” 《圖書館雜誌》, 第70卷, 第9號 (1976. 9), pp.377-380.
- 馬場俊明. “わが國における圖書館の自由の史的位相 : 公序良俗の思想との關連において” 《圖書館界》, 第30卷, 第6號 (1979. 3), pp.246-256.
- 馬場俊明. 『「自由宣言」と圖書館活動』. 東京 : 青弓社, 1993.

- 北嶋武彦. 『圖書館概論』. 東京：東京書籍, 1998.
- 森耕一. “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宣言：成立までの經過.” 『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宣言の成立』. 東京：日本圖書館協會, 1975. pp.9-16.
- 小倉親雄. “圖書館の自由.” 《圖書館界》, 第28卷, 第2・3號(1976. 9), pp.43-50.
- 小泉徹, 柳與志夫. “圖書館の自由：その根據を求めて.” 《現代の圖書館》, 第23卷, 第2號(1985. 6), pp.107-117.
- 塩見昇. “ALA「圖書館の權利宣言」の改訂：その經過と改正點についての一考察” 《圖書館と自由》, 第4集(1981), pp.52-65.
- 塩見昇. “圖書館の自由.” 《圖書館界》, 第36卷, 第5號(1985. 1), pp.242-249.
- 塩見昇. “圖書館の自由における利用者の秘密.” 《圖書館と自由》, 第9集(1988), pp.10-25.
- 塩見昇. “圖書館の自由について考えるために.” 《現代の圖書館》, 第13卷, 第4號(1975. 12), pp.160-162.
- 塩見昇. “「自由宣言」の20年.” 《圖書館と自由》, 第3集(1980), pp.7-9.
- 塩見昇. 『知的自由と圖書館』. 東京：青木書店, 1989.
- 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年鑑』. 東京：日本圖書館協會, 1984.
- 前島重方. 『圖書館活動』. 東京：理想社, 1983.
- 川崎良孝. “1980年代のアメリカ圖書館と知的自由：「圖書館の權利宣言」新解説文を中心にして (1)(2)(3).” 《圖書館界》, 第42卷, 第6號(1991. 3), pp.336-343; 第43卷, 第1號(1991. 5), pp.2-12; 第43卷, 第2號(1991. 7), pp.104-116.
- 川崎良孝. “1990年代のアメリカの圖書館と知的自由：文獻展望と今後の動向.” 《圖書館界》, 第53卷, 第3號(2001. 9), pp.397-406.
- 川崎良孝. “「檢閲とアメリカの圖書館」をめぐって：著者 Louise S. Rubinsへのインタビュー.” 《圖書館界》, 第50卷, 第4號(1998. 11), pp.156-166.
- 川崎良孝. 『圖書館の自由とは何か：アメリカの事例と實踐』. 東京：教育史料出版會, 1996.
- 河井弘志. “アメリカの知的自由の思想と組織活動” 《現代の圖書館》, 第14卷, 第1號(1976. 3), pp.24-37.
- 河井弘志. 『圖書館概論』. 東京：教育史料出版會, 1998.
- 河井弘志. 『圖書館資料論』. 東京：東京書籍, 1998.
- 河井弘志. 『藏書構成と圖書選擇』. 新版. 東京：日本圖書館協會, 1992.
- Baldwin, Gordon B. “The Library Bill of Rights: a Critique.” *Library Trends*, Vol.45, No.1(Summer 1996), pp.7-27.
- Berninghausen, David K. “Bill of Rights, Library.”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2. New York: Marcel Dekker, 1969. pp.458-464.

- Berninghausen, David. "Social Responsibility vs the Library Bill of Rights." *Library Journal*, 97, 20 (1972), pp.3675-3681.
- Horn, Zoia. "The Library Bill of Rights vs the Racism and Sexism Awareness Resolution." *Library Journal*, Vol.102, No.11(1977), pp.1254-1255.
- Krug, Judith F., James A. Harvey. "Intellectual Freedom and Librarianship."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12. New York : Marcel Dekker, 1974. pp.169-185.
- 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 *Intellectual Freedom Manual*. 5th ed.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6.
- Robbins, Louise S. "Champions of a Cause : American Librarians and the Library Bill of Rights in the 1950s : One Profession, One Ethic." *Library Trends*, Vol.45, No.1(Summer 1996), pp.28-49.
- Robbins, Louise S. *Censorship and the American Library :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s Response to Threats to Intellectual Freedom, 1939-1969*. Westport, Connecticut & London : Greenwood Press, 1996.
- Robbins, Louise S. 『検閲とアメリカの図書館：知的自由を擁護するアメリカ図書館協会の闘い, 1939-1969年』. 川崎良孝 譯. 東京：日本図書館研究会, 1998.
- Samek, Toni. "The Library Bill of Rights in the 1960s." *Library Trends*, Vol.45, No.1(Summer 1996), pp.50-60.
- Symons, Ann K. and Charles Harmon. *Protecting the right to read : a how-to-do-it manual for school and public libraries*. New York : Neal Schuman, 1995.
- Wiegand, Shirley A. "Reality Bites : The Collision of Rhetoric, Rights, and Reality and the Library Bill of Rights." *Library Trends*, Vol.45, No.1(Summer 1996), pp.75-86.

〈부록 1〉

Library Bill of Rights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ffirms that all libraries are forums for information and ideas, and that the following basic policies should guide their services.

1. Books and other library resources should be provided for the interest, information, and enlightenment of all people of the community the library serves. Materials should not be excluded because of the origin, background, or views of those contributing to their creation.

2. Libraries should provide materials and information presenting all points of view on current and historical issues. Materials should not be proscribed or removed because of partisan or doctrinal disapproval.

3. Libraries should challenge censorship in the fulfillment of their responsibility to provide information and enlightenment.

4. Libraries should cooperate with all persons and groups concerned with resisting abridgment of free expression and free access to ideas.

5. A person's right to use a library should not be denied or abridged because of origin, age, background or views.

6. Libraries which make exhibit spaces and meeting rooms available to the public they serve should make such facilities available on an equitable basis, regardless of the beliefs or affiliations of individuals or groups requesting their use.

Adopted June 18, 1948. Amended February 2, 1961, and January 23, 1980, inclusion of "age" reaffirmed January 23, 1996, by the ALA Council.

〈부록 2〉

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宣言

日本圖書館協會 1954 採擇 1979 改訂

圖書館は、基本的人權のひとつとして知る自由をもつ國民に、資料と施設を提供することをもっとも重要な任務とする。

日本國憲法は主權が國民に存するとの原理についており、この國民主權の原理を維持し發展させるためには、國民ひとりひとりが思想・意見を自由に發表し交換すること、すなわち表現の自由の保障が不可欠である。

知る自由は、表現の送り手に對して保障されるべき自由と表裏一體をなすものであり、知る自由の保障があつてこそ表現の自由は成立する。

知る自由は、また、思想・良心の自由をはじめとして、いっさいの基本的人權と密接にかかわり、それらの保障を實現するための基礎的な要件である。それは、憲法が示すように、國民の不斷の努力によって保持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べての國民は、いつでもその必要とする資料を入手し利用する權利を有する。この權利を社會的に保障することは、すなわち知る自由を保障することである。圖書館は、まさにこのことに責任を負う機關である。

圖書館は、權力の介入または社會的壓力に左右されることなく、自らの責任にもとづき、圖書館間の相互協力をふくむ圖書館の總力をあげて、収集した資料と整備された施設を國民の利用に供するものである。

わが國においては、圖書館が國民の知る自由を保障するのではなく、國民に對する「思想善導」の機關として、國民の知る自由を妨げる役割さえ果たした歴史的事實がある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圖書館は、この反省の上に、國民の知る自由を守り、ひろげていく責任を果たすことが必要である。

すべての國民は、圖書館利用に公平な權利をもっており、人種、信條、性別、年齢やそのおかれている條件等によっていかなる差別もあつてはならない。

外國人も、その權利は保障される。

ここに掲げる「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原則は、國民の知る自由を保障するためであつて、すべての圖書館に基本的に妥當するものである。

この任務を果たすため、圖書館は次のことを確認し實踐する。

第1 圖書館は資料収集の自由を有する

圖書館は、國民の知る自由を保障する機關として、國民のあらゆる資料要求にこたえなければならない。

圖書館は、自らの 責任において 作成した 収集方針にもとづき 資料の 選擇および 収集を行う。その 際

- (1) 多様な、對立する 意見のある 問題については、それぞれの 觀點に 立つ 資料を 幅広く 収集する。
- (2) 著者の 思想的、宗教的、黨派的立場にとらわれて、その 著作を 排除することはしない。
- (3) 圖書館員の 個人的な 關心や 好みによって 選擇をしない。
- (4) 個人・組織・團體からの 壓力や 干涉によって 収集の 自由を 放棄したり、紛糾をおそれて 自己規制したりはしない。
- (5) 寄贈資料の 受入にあたっても 同様である。圖書館の 収集した 資料がどのような 思想や 主張をもっていても、それを 圖書館および 圖書館員が 支持することを 意味するものではない。

圖書館は、成文化された 収集方針を 公開して、廣く 社會からの 批判と 協力を 得るようにつとめる。

第2 圖書館は 資料提供の 自由を 有する

國民の 知る 自由を 保障するため、すべての 圖書館資料は、原則として 國民の 自由な 利用に 供されるべきである。

圖書館は、正當な 理由がないかぎり、ある 種の 資料を 特別扱いしたり、資料の 内容に 手を 加えたり、書架から 撤去したり、廢棄したりはしない。

提供の 自由は、次の 場合にかぎって 制限されることがある。これらの 制限は、極力 限定して 適用し、時期を 経て 再検討されるべきものである。

- (1) 人權または プライバシーを 侵害するもの
- (2) わいせつ 出版物であるとの 判決が 確定したもの
- (3) 寄贈または 寄託資料のうち、寄贈者または 寄託者が 公開を 否とする 非公刊資料

圖書館は、將來にわたる 利用に 備えるため、資料を 保存する 責任を負う。圖書館の 保存する 資料は、一時的な 社會的要請、個人・組織・團體からの 壓力や 干涉によって 廢棄されることはない。

圖書館の 集會室等は、國民の 自主的な 學習や 創造を 援助するために、身近にいつでも 利用できる 豊富な 資料が 組織されている 場にあるという 特徴を持っている。

圖書館は、集會室等の 施設を、營利を 目的とする 場合を除いて、個人、團體を 問わず 公平な 利用に 供する。

圖書館の 企画する 集會や 行事等が、個人・組織・團體からの 壓力や 干涉によってゆがめられてはならない。

第3 圖書館は 利用者の 秘密を守る

讀者が 何を 読むかはその 人の プライバシーに 屬することであり、圖書館は、利用者の 讀書事實を 外部に 漏らさない。ただし、憲法第 35條にもとづく 齡狀を 確認した 場合は 例外とする。

圖書館は、讀書記録以外の 圖書館の 利用事實に 關しても、利用者の プライバシーを 侵

さない。

利用者の 読書事實, 利用事實は, 圖書館が 業務上知り 得た 秘密であつて, 圖書館活動に 従事するすべての 人びとは, この 秘密を 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

第4 圖書館はすべての 檢閲に 反對する

檢閲は, 權力が 國民の 思想・言論の 自由を 抑壓する 手段として 常用してきたものであつて, 國民の 知る 自由を 基盤とする 民主主義とは 相容れない。

檢閲が, 圖書館における 資料収集を 事前に 制約し, さらに, 収集した 資料の 書架からの 撤去, 廢棄に 及ぶことは, 内外の 苦澁にみちた 歴史と 經驗により 明らかである。

したがつて, 圖書館はすべての 檢閲に 反對する。

檢閲と 同様の 結果をもたらすものとして, 個人・組織・團體からの 壓力や 干渉がある。圖書館は, これらの 思想・言論の 抑壓に 對しても 反對する。

それらの 抑壓は, 圖書館における 自己規制を 生みやすい。しかし 圖書館は, そうした 自己規制におちいることなく, 國民の 知る 自由を 守る。

第5 圖書館の 自由が 侵されるとき, われわれは 團結して, あくまで 自由を 守る。

圖書館の 自由の 狀況は, 一國の 民主主義の 進展をはかる 重要な 指標である。圖書館の 自由が 侵されようとするとき, われわれ 圖書館にかかわるものは, その 侵害を 排除する 行動を 起こす。このためには, 圖書館の 民主的な 運営と 圖書館員の 聯帶の 強化を 缺かすことができない。

圖書館の 自由を 守る 行動は, 自由と 人權を 守る 國民のたたかひの 一環である。われわれは, 圖書館の 自由を 守ることで 共通の 立場に 立つ 團體・機關・人びとと 提携して, 圖書館の 自由を 守りぬく 責任をもつ。

圖書館の 自由に 對する 國民の 支持と 協力は, 國民が, 圖書館活動を 通じて 圖書館の 自由の 尊さを 體驗している 場合にのみ 得られる。われわれは, 圖書館の 自由を 守る 努力を 不斷に 續けるものである。

圖書館の 自由を 守る 行動において, これにかかわった 圖書館員が 不利益をうけることがあつては ならない。これを 未然に 防止し, 万一そのような 事態が 生じた 場合にその 救済につとめることは, 日本圖書館協會の 重要な 責務である (1979. 5. 30 總會決議)